

보도시점 (전매체) 12. 11.(월) 14:00

이제는 사업전환도 대중소 상생으로 한다!

- 중소기업부, 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승인(12.8)
- 오기웅 차관, 첫 사례인 '세아베스틸'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1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주)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이며,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심사승인 후 자금기술개발(R&D), 특례 등을 지원

* (공동사업전환 제도)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업 전환할 수 있도록 일괄 승인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2월 8일 (주)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하였으며, 오기웅 차관은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의 첫 사례인 '(주)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직접 찾아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주)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하여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경량·고강도 특수강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부품도 중소기업 2개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주)세아베스틸은 제강 부산물을 매립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과 친환경 제품 제조로 새로운 경쟁력과 판로를 확보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다.

오기용 차관은 (주)세아베스틸의 제강공정 등을 둘러보고, (주)세아베스틸과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공동사업전환 과정에 필요한 판로, 인력, 금융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해소 등을 건의하였다.

끝으로 오기용 차관은 “공동사업전환의 첫 포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고 이번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동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모형(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실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전종훈 (044-204-7482)
			주무관	장재환 (044-204-7485)
			주무관	강민성 (044-204-7487)



참고 1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현장방문

□ (일시·장소) 12월 11일(월), 14:20~15:30('70)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 전북 군산시 외항로 522

□ (참석자) 차관, (주)세아베스틸 대표, 중소기업 7개사 대표* 등 12명

*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9개사 중 2개사 불참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20~14:4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1) 공동사업전환 브리핑 - 차담회(5') - 기념 촬영(2') - 참석자 소개(2') - 모두 말씀(5') - 공동사업전환 제도 개요 및 계획 발표(3') - 세아베스틸 상생 방향 발표(5') -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증서 수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임원회의실 · 대표이사실 · 참여기업 전체 · 사회자 (중진공) · 기업구조개선과장 · 세아베스틸 ESG기술센터장 · 차관 → 대표 중소기업(2명)
14:45~15:3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2) 현장 간담회 -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40') - 마무리 말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전원

참고 2

사업전환 제도 개요

- (목적)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신사업 등으로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 (근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06년 제정)
- (유형) 업종의 변경과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변경

구분	요건	전환사업 비중
업종 전환	현재 영위 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100%
업종 추가	현재 영위 업종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제품 추가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 추가	
서비스 추가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추가	
제공방식 변경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제공방식의 변경	

※ 전환비율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대상)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 (절차)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심사·승인하고, 전환에 필요한 자금·R&D 등 지원

< 사업전환 승인기업 지원 내용 >

구분	지원내용
금융	· 사업전환자금 (10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기술보증 우대 (10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
컨설팅	· 사업전환 계획 수립 지원 (필요시, 노동전환,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
R&D	· 구조혁신 R&D (총 사업비의 75%, 최대 2년 3개월, 5.3억원 이내)
정부사업 우대	· 수출바우처 가점(1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가점(3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공공입찰 참여 시 신인도평가 가점(1점),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가점, 병역지정업체 가점(4점)
상법상 특례	· 사업전환을 위한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절차 간소화
기타	· 산업위기지역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유희설비 유통 지원 등